

의안번호	2210967
의 퇴 인	서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1.
추 계 번호	25C3337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18세가 된 국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,343억원(연평균 1,46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							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18세 3개월 보험료 지원 (안 제100조의5 제1항~제6항)	1,381	1,353	1,399	1,584	1,626	7,343	1,46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지역가입자) 등	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에서 “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”를 제외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부과	의무규정
2	안 제100조의5(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) 제1항~제6항	국가는 18세가 된 사람 중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, 소득이 있는 사업장가입자·지역가입자 등에게 3개월간 보험료를 지급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(이 때의 소득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액을 적용) ※ (안 제100조의5 제7항·제9항) 해당 보험료 지원 기간의 소득은 기준소득월액 산출 시 평균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지원 기간(3개월)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	의무규정
3	안 제100조의5(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) 제8항	국가는 18세가 되어 3개월 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(지역가입자) 등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5(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) 제1항~제6항	○	○ 장래인구추계 및 기준중위소득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추계 ※ 단,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노령연금액 증액 효과는 제외
3	안 제100조의5(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) 제8항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추계가 가능한 안 제100조의5제1항~제6항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만 제시(이외 조항에 대한 추계 미실시 사유는 이하 참고)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(이하 ‘보험료’)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장 효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와 급여액 지출이 증가¹⁾할 가능성이 있으나, 급여액 지출 증가 효과는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나타나므로(추계기간에 미포함) 본 추계서에서 고려하지 않음
 - 동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가 18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이 11~12월인 사람의 경우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게 되지만, 현재 월 단위의 인구추계 자료가 부재하므로 특정 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그 해에 3개월분의 지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1)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보험료 지원 기간과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고,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급자가 되는데, 두 경우 모두 급여액 지출을 증가시키게 됨

- (안 제9조) 개정안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가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에 포함되는 경우,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보험료 수입 및 급여 지출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험료 추후납부를 선택할 사람의 수와 늘어나게 될 추후납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현재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“적용제외자”에 해당되며, “적용제외” 기간 중 처음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
 - 적용제외 기간 중 한 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
 - 현행법상 27세가 도래하였음에도 소득이 없는 자는 “납부예외자”에 해당되며, “납부예외” 기간은 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함
 -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하게 되는 급여액이 증가함
 - 개정안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자를 “적용제외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,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“납부예외자”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
 -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령하게 되는 급여액이 증가함
- (안 제100조의5제8항) 국가가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18세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과 횟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홍보와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, 18세 등 청년을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은 없음
-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설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18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3개월 간 중위소득월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- (대상자 수)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의 18세 인구를 적용

[표 2] 2026~2030년 18세 인구 추계

					(단위: 명)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18세 인구	484,688	450,996	444,178	479,862	471,289

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2023.12. 공표 통계)

- (지원 단가) 추계기간의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값(이하 ‘중위소득월액’)이 2020~2024년의 중위값(100만원으로 유지됨)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, 해당 중위소득월액의 전년도 추정치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지원 단가를 산출
 - 안 제100조의5제1항은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‘중위소득월액’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의하고 있음
 - 다만, ‘지역가입자 전원’ 개념을 납부예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납부예외자의 소득액(0원)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액이 0원이 되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만 고려하여 중위소득월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시 기준소득월액에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의 중위소득월액 추정치 역시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적용

[표 3]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값(‘중위소득월액’) 추이
(단위: 만원, %)

적용 기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지역가입자(소득신고자) 기준소득월액의 중위값	100	100	100	100	100	-

자료: 국민연금공단

-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343억원
(연평균 1,46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18세 보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지원 대상자 수(명, A)	484,688	450,996	444,178	479,862	471,289	-	-
보험료 기준단가 ¹⁾ (만원, B)	100	100	100	100	100	-	-
보험료율(% , C)	9.5	10.0	10.5	11.0	11.5	-	-
지원 개월 수(개월, D)	3	3	3	3	3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, A×B×C×D)	1,381	1,353	1,399	1,584	1,626	7,343	1,469

주: 1) 2020~2024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값이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
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
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